

# '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안내서

## ▣ 접수 유의사항

### 1. 대상 : '23년 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기업

- ※ '22년 지정된 공급기업은 '23년 1월 17일 또는 2월 7일부터 자격이 만료되므로 '23년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공모 기간에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.
- ※ (재지정 대상) '21년 하반기 지정 공급기업과 '22년 지정 공급기업이며, 해당되지 않는 과거년도('19년, '20년, '21년 상반기) 지정 공급기업은 신규 접수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.

### 2. 기간 : (모집) '22년 9월 20일(화) 10시부터 '22년 11월 4일(금) 16시까지(46일간)

### 3. 접수 시 사업관리시스템(PMS) 접수화면 內 'Step.1 지원자격 검토'는 모두 자동 검증 항목이며 연계된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연계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4. 작성 내용은 단계별로 임시저장이 가능하나, 접수의 경우 '최종 제출'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·삭제가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

☞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마감일 전일까지 최종 제출을 권장합니다.

2022. 9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

## ▣ 공급기업 모집 주요 변경사항

※ '22년 대비 변경되는 사항을 사전 공지하오니, 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기존	'23년 변경
1. 모집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'19년~'20년) 상시 모집</li> <li>▸ ('21년) 2회 모집</li> <li>▸ ('22년) 1회 모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정례화]</b> 공급기업 모집 연 1회</li> </ul>
2. 재지정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모두 신규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신설]</b> <b>재지정 제도 신설</b> (21년 하반기, 22년 지정 공급기업 대상)</li> <li>* 적격성 검토와 기업 신용정보 등록 후 적격 여부 확인</li> <li>- 세부내용 모집 안내서 p.6 참고</li> </ul>
3. 수요예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해당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신설]</b> <b>수요 데이터를 사전에 조사하여 공급기업에 분석 보고서 형태의 정보 제공</b></li> <li>- 추후 PMS 및 포털 內 게시 예정</li> </ul>
5. 실적 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해당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신설]</b> <b>공급기업의 바우처 참여 실적을 데이터바우처 포털 內 공개</b></li> <li>- 세부내용 모집 안내서 p.6 참고</li> </ul>
4. 공급기업 목록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해당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신설]</b> 사업관리시스템(PMS)에 <b>공급기업 리스트 게시</b></li> <li>* PMS 접수 시 리스트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고 게시 예정</li> <li>- 세부내용 모집 안내서 p.17 참고</li> </ul>
6. 상품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면 참여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신설]</b>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상관 없으나, <b>사업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</b>이어야 함</li> <li>* 산출물 기반 서비스 상품 제공불가 (플랫폼 이용권, 데이터 분석 미포함 단순 결과보고서, 라이선스 등)</li> <li>- 세부내용 모집 안내서 p.18 참고</li> </ul>
7.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빅데이터플랫폼 상품 가점(1점) 부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[폐지]</b> <b>가점 부여 폐지</b>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을 통한 별도 지정 연계 절차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(NIA)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</li> </ul>		

# 목 차

I. 데이터바우처 사업 안내 .....	1
1. 추진 배경 .....	1
2. 사업 내용 .....	1
3. 추진 방법 및 절차 .....	2
II. 공급기업 모집 안내 .....	3
1. 목적 및 주요 변경사항 .....	3
2. 모집 분야 및 절차 .....	3
3.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.....	5
4. 제출서류 목록 .....	8
5. 모집 기간 및 문의처 .....	10
III. 공급기업 지정 방안 .....	11
1. 심사체계 및 절차 .....	11
2. 평가 기준 및 방법 .....	12
IV. 기타(필독 사항) .....	13
1. 신청안내 및 일반 .....	13
2. 수요기업과의 매칭 .....	14
3. 상품 및 서비스 제공 .....	15
4. 공급기업 참여 시 확인사항 .....	15
5. 부정 수급 또는 부정참여 .....	16
[별첨] 제출서류 서식 .....	17

# I 데이터바우처 사업 안내

## 1. 추진 배경

◆ **全 산업, 전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 및 디지털 경제성장 견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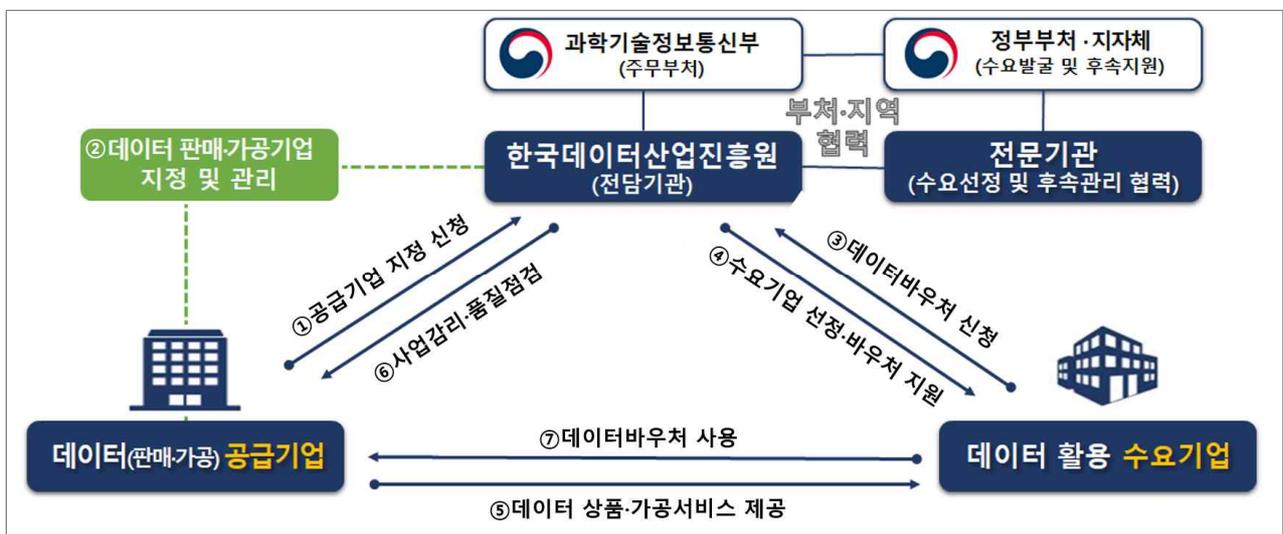
-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으로 新산업 분야 성장 및 기존 전통 산업의 융합·혁신 가속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토대 마련 필요
  - 데이터 구매·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·공급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

※ '21년 2,637건 지원(1,230억원) → '22년 2,680건 지원(1,241억원)

## 2. 사업 내용

- (추진 개요)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·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·가공서비스 지원
- (추진 절차) 공급기업 지정 → 수요기업 평가·매칭 → 수요기업·공급기업·K-DATA간 3자 협약체결 →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

< 데이터바우처 지원 추진체계 >



**< 추진 체계별 주요 역할 >**

구분	주요 역할
<b>과기정통부</b> (주무부처)	▶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
<b>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</b> (전담기관)	▶ 추진계획 이행·관리 및 사업 주관 ▶ 관계부처·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·운영 ▶ 공급기업 모집·지정·관리 ▶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·선정 및 지원 ▶ 우수성과사례 창출·확산
<b>관계부처 산하기관</b> (전문기관)	▶ 전문분야별 사전심사, 전문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▶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▶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<b>지방자치단체</b>	▶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, 사업설명회 협력 ▶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
<b>수요기업</b>	▶ (구매) 데이터 상품을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, AI개발 ▶ (가공) 맞춤형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, AI개발
<b>공급기업</b>	▶ (판매)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판매 및 활용지원 ▶ (가공)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

### 3. 추진 방법 및 절차

-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요기업을 심사·선정하여 지원
    - 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판매기업 및 역량 있는 가공기업(이하 '공급기업')을 지정
    - ② 수요기업은 필요 데이터 상품, 가공서비스 유형을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신청·접수
    - ③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된 수요기업과 협약 후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
    - ④ 해당 공급기업에 진흥원(또는 수행기관)이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비용 지급
- ※ 추진방법 및 절차는 '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II 공급기업 모집 안내

### 1. 목적 및 주요 변경사항

- (공급기업 지정 목적)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·서비스 개발(가공)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양질의 데이터 및 가공 서비스를 공급할 데이터bauer 공급기업 지정

#### < 데이터bauer 공급기업 지정 관련 주요 변경사항 >

항목	주요 내용
재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 지정된 공급기업은 기업 신용정보와 적격성 검토 등 지정 간소화 절차를 통해 '23년 데이터bauer 공급기업으로 지정</li> <li>※ 단, 재지정 대상인 판매 데이터는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을 희망할 시 신규 지정 절차를 통해 접수하여야 함.</li> <li>또한, 기 지정 상품 외 추가 데이터 상품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,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.</li> </ul>
실적 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22년 데이터bauer 지원사업 참여 공급기업에 한하여, 매칭 현황, 감리 결과 등 Bauer 포털로 실적 공개('22년 12월 포털 반영예정)</li> </ul>
수요 예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·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, 비즈니스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('22년 10월 예정)</li> <li>※ '23년 데이터bauer 공급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제공되는 수요예보를 확인하고,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등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참고 요망</li> </ul>

### 2. 모집 분야 및 절차

- (모집 분야) 다양한 분야의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판매기업과 수요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게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공기업으로 구분
- ※ 접수 시 판매기업과 가공기업으로 모두 신청 가능

분야	기업 역할
판매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,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</li> <li>▶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없으나, 사업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이 직접 활용*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</li> <li>* 수요자 활용할 수 있는 정형·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'솔루션', '서비스' 형태의 판매 상품은 평가 시 등록 제한될 수 있음</li> <li>▶ 판매기업의 데이터 판매 경험 및 자격 등 참여 제한은 없음</li> <li>※ 무료공개를 전제로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한 데이터 또는 소유권 등 권리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판매기업 등록 불가</li> </ul>
가공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데이터 가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데이터 가공 SW를 보유한 기업</li> <li>▶ 가공 분야는 수요기업과 매칭 시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가공과 AI 가공으로 구분하고 데이터 가공업무의 분야 및 범위는 제한 없음</li> </ul>

■ (참고) 데이터 가공업무 유형

업무 유형	내용(예시)
전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이종, 다종 데이터 테이블 또는 컬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이산, 집합 등</li> <li>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 가능(machine readable) 형태로 변환</li> </ul>
품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야별·업종별 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, 품질개선(클렌징)</li> <li>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</li> <li>값 필터, 정합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</li> </ul>
코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,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</li> <li>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</li> </ul>
시각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도, 그래프, 차트, 분석 대시보드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</li> </ul>
정보추출 또는 조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미지·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, 스크리핑</li> <li>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</li> </ul>
태깅, 라벨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텍스트, 이미지,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, 라벨링, 언라벨링</li> </ul>
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빅데이터 분석 진행을 위한 컬럼의 이산, 집합, 시각화</li> <li>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분석 설계</li> </ul>
가명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데이터 보호 관련 기술(AI기반 재현데이터 생성 솔루션 등) 개발을 위한 가공</li> <li>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(AI Hub)에 등록된 데이터 재가공</li> <li>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가공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업무</li> </ul>

■ (참고) 데이터 가공 사례

- ▶ **일반가공** : 정형화된 데이터(숫자, 텍스트 등)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, 설계, 분류·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

원천데이터 구축 → 데이터 설계 → 데이터 분류 → 데이터 클렌징 → 빅데이터 분석

- ▶ **AI가공** : 정형·비정형(영상·이미지 등)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최적의 AI모델 도출을 위해 단계별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

원천데이터 구축 → 데이터 설계 → 데이터 라벨링(기계판독 및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) 및 데이터셋 구축 → AI모델링 → 테스트 → 반복

\* AI가공 서비스는 ①데이터설계, ②라벨링-태깅-데이터셋 구축, ③AI모델링 도출, ④성능 및 결과 분석(테스트 데이터셋 개발) 과정에서 필요한 가공서비스 모두 가능

- (지정 절차) 공급기업 접수 및 지정 절차(공고부터 결과발표까지)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

구분	내용
공고 및 접수 (공고일~11.4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www.kdata.or.kr">https://www.kdata.or.kr</a>),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kdata.or.kr/pms">kdata.or.kr/pms</a>), 포털(<a href="http://kdata.or.kr/datavoucher">kdata.or.kr/datavoucher</a>) 공고</li> <li>▶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kdata.or.kr/pms">kdata.or.kr/pms</a>)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</li> </ul>
▼	
적격성 검토 (11월 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업 건전성을 기준으로 적격 요건 평가(세부내용은 신청 자격 참고)</li> </ul>
▼	
지정평가 (11월 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(세부내용은 평가 기준 및 방법 참고)</li> </ul>
▼	
결과발표 (~12.5. 예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kdata.or.kr/pms">kdata.or.kr/pms</a>)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</li> </ul>
▼	
정보 입력 및 공시 (~'23.1. 예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업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kdata.or.kr/pms">kdata.or.kr/pms</a>)에서 기업과 상품 및 서비스 정보 추가 입력</li> <li>▶ 기업정보와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 정보를 포털(<a href="http://kdata.or.kr/datavoucher">kdata.or.kr/datavoucher</a>)에 공시</li> </ul>

### 3.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

- ① (신청 자격)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·중소기업·정부 및 지자체·공공기관·학교·연구소 등

신청 분야	신청 자격
판매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데이터 상품의 유통권리, 판매권리를 <b>직접 보유</b>한 기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데이터 상품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행법(개인정보보호법 등)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데이터 상품은 지정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▶ 제공하는 상품 기준은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상관없으나, 사업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어야 함</li> <li>▶ 데이터 상품 거래를 위한 <b>투명한 가격체계를</b> 보유한 기업</li> </ul>
가공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, 인력 등 <b>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체계</b>를 보유한 기업</li> </ul>

② (신청 제외대상) 기업 건전성 등에 제약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공급기업으로 신청 불가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  - ※ 단, 국세·지방세의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채무불이행·단기연체 중인 기업
  - ※ 단 채무불이행의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데이터바우처 제재 결과에 따라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(공모마감일 기준)
- 부정당사업체로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

③ (신청 방법) 사업관리시스템(PMS)에 접속 후 접수 안내에 따라 필요 항목을 입력하고,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

신청 분야	구분	신청 방법		
판매기업	신규	· 기업정보 입력, 신규지정 신청서, 사업수행계획서, 법률 검토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신청		
	재지정	· 기 지정된 상품과 동일할 경우, 적격성 검토와 재지정/상품추가 신청서, 사업수행계획서, 기업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신청		
		구분	수정 가능 항목	수정 불가능 항목*
		접수 시 정보등록	· 가격정책 유형, 가격정책 및 단가표	· 상품명, 상품분류, 데이터사이즈, 위탁판매 여부, 배포 플랫폼, 샘플파일, 법률검토확인서
지정 후 정보등록	· 라이선스, 상품설명, 활용사례, 사용자 가이드, 기업 또는 상품로고	· 원천데이터 출처, 갱신주기, 사용언어, 확장자		
		* 기 지정된 상품의 변동사항이 수정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'상품추가'로 등록하여야 함		
	상품 추가	· 기 지정된 상품 외 추가 상품을 신청할 경우, step.4 상품추가 '있음' 선택 후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수행계획서, 법률 검토 확인서 등 제출서류 등록하여 신청		
가공기업	신규	· 기업정보 입력, 신규지정 신청서,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신청		
	재지정	· 기 가공서비스와 동일할 경우, 적격성 검토와 재지정 신청서, 사업수행계획서, 기업 신용정보 등록하여 신청		

※ 사업수행계획서 서식은 별첨되어 있으며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
 ※ 동일 기업에서 판매와 가공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접수는 각각 진행

<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Step별 정보 >

구분	판매기업		가공기업	
	신규	재지정	신규	재지정
Step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지원자격 검토</li> <li>- 기업 정보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토하며, 부적격시 관련 서류별 기관 문의번호를 통해 수정 후, 접수 진행</li> </ul>			
Step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기본정보</li> <li>- 접수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의 기본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</li> </ul>			
Step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바우처 상품정보</li> <li>- 등록하고자 하는 판매 상품정보 입력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제출 서류 업로드</li> <li>- 가공기업 지정평가를 위한 서류 업로드</li> </ul>	
Step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제출 서류 업로드</li> <li>- 판매기업 지정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업로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추가 상품 등록</li> <li>- 기 지정 상품 외 추가 상품 등록</li> </ul>	해당 없음	해당 없음
Step.5	해당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제출 서류 업로드</li> <li>- 판매기업 지정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업로드</li> </ul>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※ 부문별 Step 항목이 상이하므로,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에 유의하여 접수바랍니다.

#### 4. 제출서류 목록

\* ● : 필수 제출 서류, ▲ : 변경 가능 서류, ◐ : 일부 제출, - : 해당없음

제출서류 (PDF 파일 업로드)	판매기업			가공기업		서류정보
	신규	재지정	상품추가	신규	재지정	
PMS 정보 조회 (시스템 인증을 위하여 기업 인증서 필요)						사업자 등록 확인
						국세완납 확인
						지방세완납 확인
	●	●	●	●	●	채무불이행 확인
						단기연체 확인
						휴·폐업 확인
						부정당제재 확인
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(사업기간 7년 이상 기업만 제출)	●	●	●	●	●	신용평가社 발급
신청서	●	●	●	●	●	별첨 서식 1, 2
사업수행계획서	●	●	◐	●	●	별첨 서식 3
가격정책 및 단가표	●	▲	●	●	▲	별첨 서식 4
실적증명서 (실적 있는 경우 제출)	●	-	-	●	-	-
상품별 법률 검토 확인서 (PMS에 접수하는 상품명과 동일해야함)	●	-	●	-	-	별첨 서식 5
데이터 판매상품 확약서	●	-	●	-	-	별첨 서식 6
데이터 샘플	●	-	●	-	-	30MB 용량 제한

## [중요] 제출서류별 유의사항

- ※ **(기업 규모 확인)** 최근 1년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**중기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**에서 중소기업확인서 **사전 발급 필요**
- ※ **(국세 완납 확인)** 최종 제출 이후 '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'을 검토하여 체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성 검토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
- ※ **(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)** 2021년 귀속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되 **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을 포함하는 서류만 인정**
  - 정부 및 지자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
- ※ **(상품추가인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)** 사업수행계획서 영역 Ⅱ(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)만 작성하여 제출
- ※ **(가격정책 및 단가표 수정 가능)** 기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Ⅰ 내 가격정책 및 단가표에 변동된 부분이 있을 시 사업관리시스템(PMS) 접수화면 Ⅰ Step.3 에서 [별첨 서식4] 제출
- ※ **(실적증명서)**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실적 증빙
- ※ **(법률 검토 확인서)** 본 서류는 신규 등록 **상품마다** 작성해야 하며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,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현행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공적 서류로 **'2022.9.20.(공급기업 모집 공고일) 이후 공고된 서류 양식으로 작성된 건만 인정(단, 휴업 중인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인정 불가)**
  - \* 법률 검토 확인서는 신규 지정 데이터 상품에 한해 제출 필요하며, 전담 기관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
- ※ **(데이터 샘플)** 데이터 상품을 구성하는 전체 컬럼에 해당하는 것으로 5백 건 내외의 상품별 레코드를 제출하거나 데이터바우처 포털과 연동을 통해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 API/ 데이터 뷰 콘솔/ 툴 등 방법 제시

## 5. 모집 기간 및 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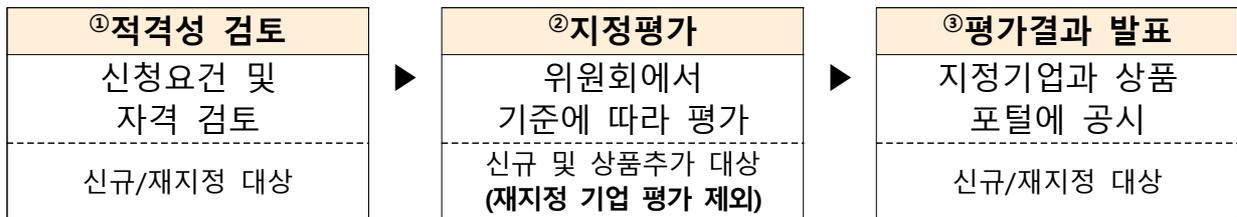
- (공고 기간) 2022년 9월 20일(화) 10시부터 11월 4일(금) 16시까지
  - ※ 접수 마감 시간 내에 시스템상 '최종 제출'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, '최종 제출' 후에는 수정·삭제가 불가
  - ※ 마감 시간 신청자 집중을 피하고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마감일 전일까지 최종 제출 권장
  - ※ 전담기관 일정에 따라 공고 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(접수처)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(kdata.or.kr/pms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(문의처)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1833-2246 또는 PMS 1:1 문의

### III 공급기업 지정 방안

#### 1. 심사체계 및 절차

- (심사체계)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와 지정평가를 통해 지원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

#### < 공급기업 심사 절차 >



- ① (적격성 검토) 신규 및 재지정 공급(판매/가공)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,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업 건전성 검토
  - 적격성 기준 부적합, 제출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 시 '부적격' 처리되며(평가대상 제외),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

구 분	적격성 기준
공통 (판매 및 가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업기간 7년 미만 기업 : 채무불이행·단기연체 없는 기업</li> <li>▶ 사업기간 7년 이상 기업 : 채무불이행·단기연체 없고,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*</li> <li>*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불필요</li> <li>▶ 참여 제한 조건 검토(부정당사업체, 휴·폐업 기업, 세금체납 기업)</li> <li>* 체납 유예는 유예 마감일이 공모마감일('22.11.4) 이후인 경우에 한해 인정</li> <li>▶ 부도, 파산·회생절차의 개시신청, 결산감사 의견 등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</li> </ul>

※ 적격성 검토 항목은 PMS에서 자동 정보 조회(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별도 제출)

- ② (지정평가) 신규 지정 공급(판매/가공)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,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과 데이터 및 서비스의 상품성, 활동 전략 항목을 평가
- ③ (평가결과 발표) 결과는 신청·접수 페이지에 공개되며 지정기업은 기업정보와 상품·서비스의 추가 정보 등록 예정

## 2. 평가 기준 및 방법

- (평가 기준) 평가영역별 과락제(영역별 점수 40% 미만 불합격)를 적용하고,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공급기업으로 지정(비경쟁 자격심사)
  - 재지정의 경우, 적격성 검토만 진행하며 지정평가는 제외
  - 상품 추가의 경우, 평가영역 ‘II.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 정책의 적정성’ 만 평가하고, 점수가 해당영역 배점(40점)의 60% 이상이면 승인
- (평가방법) 데이터 활용·유통·비즈니스 전문가, 사업관리, 법률, 회계 등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
  - 분야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모두 진행한 후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점수를 산출

### < (참고) 판매 및 가공기업 평가항목 >

영역 구분	평가항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참여 목적의 적합성 (20점)	▸ 사업 취지와 참여 목적의 적합성	10
	▸ 조직적·인적 데이터 공급역량 및 체계성	10
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 정책의 적정성 (40점)	▸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상품성 및 정보제공 우수성	20
	▸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가격 근거 및 정책의 적정성	20
공급기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(40점)	▸ 자원 활용 전략의 우수성	15
	▸ 수요 발굴 전략의 체계성	10
	▸ 품질확보 및 후속 지원 전략의 우수성	15
<b>평가 점수(합계)</b>		<b>100</b>

## 1. 신청안내 및 일반

- '22년도 상반기 지정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자격 기간이 '23.1.17. 또는 '23.2.7.부터 종료됨에 따라 본 공고를 통해 공급기업 자격을 지정받아야 함
  - ※ '23년 바우처 사업에서 수요기업과 매칭하여 공급기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 공고의 모집기간에 신청 후 공급기업 자격을 취득해야 지원 가능
-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, 제출자료 누락,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공급기업 신청 후 수정 불가
- 사업관리시스템(PMS) 접수화면 內 'Step.1 지원자격 검토' 내 연계된 데이터 누락 및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, 부적격 항목 보완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여야 함
-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지정 해지 및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판매기업 및 가공기업으로 동시 신청 시 공통서류는 동일한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, 공급 부문별로 판매기업 또는 가공기업 제출서류는 신청 사이트에서 각각 요구한 서류를 등록
- 가격정책 및 단가표(서식 4)는 사업수행계획서(서식 3)의 가격정책과 동일한 양식이나 평가 및 포털 공시를 위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
  - ※ 가격정책 및 단가표 내용은 서식 3과 4의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
- 전담기관의 데이터 상품 기준(자격 기준 참고)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신청·지정 시 해당 데이터 상품을 지정해지 할 수 있음
- 제출서류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

- 지정된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(공급기업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)에 추가 정보(기업정보와 상품·서비스 정보)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
- 지정된 공급기업이 제출한 정보 및 서류 중 일부는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수요기업에 공개되며, 지정 공급기업 리스트는 사업관리시스템(PMS)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게시할 예정
- 본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·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데이터를 판매·제공하는 기업에 있음
- 지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추가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정이 해지될 수 있음
- 세부사업 계획, 수요기업과 협약체결, 사업비 점검,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「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」, 「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」과 「공급기업 지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」에 따름
- 기타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 2. 수요기업과의 매칭

- 공급기업 신청 시 제출한 데이터 상품정보(가격정보 포함), 가공서비스 정보(가공 단가 포함), 공급기업정보 등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공시
- 차년도 사업 수행에 있어 수요기업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공급기업에 한해 관련 실적을 포털 공개
  - ※ 공급기업 실적은 '22.12월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며, 실적 항목에 관한 세부 내용은 '23년 지정된 공급기업에 한하여 추후 별도 안내 예정
- 수요기업은 공시된 공급기업의 데이터상품정보, 가공기업정보를 확인하여 자사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상품, 가공서비스를 신청
  - ※ 매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후 공지될 '23년 수요기업 모집안내서 참고

### 3. 상품 및 서비스 제공

- 수요기업 선정 후 매칭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-공급기업-진흥원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후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
- 제공하는 상품 기준은 유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은 상관없으나, 사업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어야 함
  - ※ 산출물 기반 서비스 상품 제공 불가(플랫폼 이용권, 데이터 분석 미포함 단순 결과보고서, 라이선스 등)  
다만, 데이터 제공과 함께 플랫폼 등을 통한 부가적인 분석 서비스 제공은 가능
- 수요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적용을 사업 기간 내 완료해야 하나, 이와 별도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한 데이터에 대한 유지보수 조건·기간은 협의서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까지 활용 가능
  - ※ 다만,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는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

### 4. 공급기업 참여 시 확인사항

- 판매기업과 가공기업의 동시 참여도 가능하나, 가공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데이터바우처 판매상품으로 등록된 데이터를 수요기업에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
- 가공기업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인력 자원 한도 내에서 수요기업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,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수요기업에 서비스 제공 불가
- 데이터 무료개방을 전제로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데이터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없음. 다만, 해당 기업이 추가 가공을 통해 별도 상품화를 하여 유통이 가능한 경우(저작권 또는 유통 권리에 대한 법률 검토에 따른 확인 시) 참여 가능

## 5. 부정 수급 또는 부정 참여

- 공급기업이 수요기업과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지원금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,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(데이터구입·가공서비스 지원금)의 최대 5배 환수, 사업참여 제한,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음

 신고처 : e클린 신고센터(케이휘슬)

· <https://www.kbei.org/www/helpline/step1.php?cid=kdata>

## **[별첨] 제출서류 서식**

**[서식 1] [공통] 공급기업 신규지정 신청서**

**[서식 2] [공통] 공급기업 재지정/상품추가 신청서**

**[서식 3] [공통] '23년 공급기업 사업수행계획서**

**[서식 4] [공통] 판매 데이터·가공서비스 가격정책 및 단가표**

**[서식 5] [판매기업] 법률 검토 확인서**

**[서식 6] [판매기업] 데이터 판매상품 협약서**





목 차

**I. 기업 역량 및 참여 목적**

1. 기업 개요 및 핵심 역량
2. 참여 목적 및 취지
3. 데이터 공급역량
4. 유사사업 참여 실적 및 성과

**II. 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**

1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상품성
2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상세정보
3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가격정책 및 단가표

※ 재지정 판매기업의 상품추가 시에는 ‘II. 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’만 작성 후 제출

**III. 공급기업 활동전략**

1. 공급기업 활동을 위한 자원 활용 전략
2.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전략
3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품질확보 전략
4. 수요기업 유지보수(후속 지원) 및 협업체계 전략

# I 기업 역량 및 참여 목적

## 1. 기업 개요 및 핵심 역량

<작성요령>

- 기업 개요 및 주요사업 분야, 목표시장, 주요 연혁 등 핵심 역량 자유롭게 기재
  - 기업 개요, 핵심 가치, 사업실적, 연혁, 사업 영역 등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재
  - 사업 영역의 대내외 환경, 기업의 주요 서비스 및 제품, 주력 시장 등 기업의 주요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재
  - 기업의 핵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

☞ 작성 :

## 2. 참여 목적 및 취지

<작성요령>

- 관련 분야시장의 국내외 현황과 참여 목적, 사업의 단기·장기적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기재
  -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재
  - 기존 사업 또는 신규 사업과 공급기업 참여 목적(취지)와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재

☞ 작성 :

### 3. 데이터 공급 역량

<작성요령>

- 데이터bauer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적·물적·조직적 자원 현황, 차별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재
- (인적·조직적 자원) 조직 구성 및 세부 조직별 역할, 인력 및 역량 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
- (물적 자원) 보유 플랫폼, 장비, SW 등 공급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등을 자세히 기재

☞ 작성 :

### 4. 유사사업 참여 실적 및 성과

<작성요령>

- 사업명, 사업내용, 거래처명, 계약 기간, 사업금액, 성과 등 사업실적 내용에 대해 기재
- 데이터bauer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유사사업의 참여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년의 주요 유사사업 참여 내용, 지원기업의 역할, 성과 및 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
-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한 사업실적을 작성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을 기재
- 필요 시 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재

☞ 작성 :

## II 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

※ 판매기업만 **상품표(상품명·상품 분류)**를 작성하며, **상품이 2개 이상이면 표 추가하여 기재, 재지정-상품추가 해당 시 작성 필수**

상품 ①	상품명	
	상품 분류	교통/ 금융/ 농식품/ 디지털산업혁신/ 라이프로그/ 문화/ 산림/ 소방안전/ 스마트치안/ 유통소비/ 중소기업/ 지역경제/ 통신/ 해양수산/ 헬스케어/ 환경 中 택 1

### 1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의 상품성

<작성요령>

- 판매 데이터 또는 가공 서비스의 상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
  - 해당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기술, 활용 예시, 성과 등 기재
  -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한 해당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예상 수요 등 기재
  - 타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대비 차별성 또는 우수성 등 비교우위를 상세히 기재

☞ 작성 :

### 2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의 상세정보

<판매기업 작성요령>

- 수요기업측이 판매 데이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상세정보 및 데이터 상품 활용 정보 기재
  - 판매 데이터 상세 정보(데이터구조, 데이터 설명, 업무 프로세스) 기재
  - 데이터 형성 과정(생산, 수집 또는 외부 구매) 정보 등 자세히 기재
  - 판매 데이터 활용 안내 매뉴얼 및 API-컬럼 정의서 제공 계획 기재

<가공기업 작성요령>

- 가공 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공 서비스의 상세정보 기재
  - 가공업무 상세 정보(계획수립, 가공업무, 가공검수, 가공업무 방법 등) 기재
  - 이미지, 도식, 차트 활용 가능

☞ 작성 :

### 3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가격정책 및 단가표

**<판매기업 작성요령>**

- ※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는 예시이며 기업의 정책에 맞게 작성 가능
- ※ 수요기업과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작성 시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의
- (가격유형) 해당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과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1 후 기술
  - (종량제) 데이터 사용량(바이트, 레코드 건수) 또는 사용 횟수(다운로드 횟수, 접속 call 수)에 따라 가격정책을 기술
  - (정액제) 데이터셋에 대해 계약 용량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금 방식을 기술
  - (정액 종량 혼합제) 기본료의 기준(횟수, 용량, 시간 등)과 기본료 이전 이후의 가격정책을 기술
  - (주문 협의제) 주문 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격 범위와 협의 방식 기술
  - (기타) 상기 가격유형 이외의 기업 고유의 가격정책 기술

**<작성 예시>**

상품명		지역별 인구이동 및 카드사용 내역
가격정책	유형	설명 :종량제
	내용	설명 : - 횟수의 기준은 접속 call 수 - call 당 00원 - call n건 x 000원 = 000원
기타		설명: 이용자 맞춤 API 개발비용 000원 별도 과금(기업별 사용료 정책 제시)

☞ 작성 :

**<가공기업 작성요령>**

- ※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는 예시이며 기업의 정책에 맞게 작성 가능
- ※ 수요기업과 과제협의를 거쳐 견적서 작성 시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의
- 인력별, 업무별로 구분하여 가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비용의 경우 크게 인건비와 경비(데이터 가공비/ SW 사용료/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)로 나누어 기술

<작성 예시>

기상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항목				
<b>인건비</b>	참여인력 구분      업무 구분      업무 내용		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품질검사	설명	
	선임개발자, 개발자	수치자료가공	설명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학습데이터 생성	설명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기상자료처리	설명	
	인건비 단가			
	·특급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 ·책임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 ·선임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 ·개발자(경력 n년 미만) : m/m 000원			
	가공비용 산식			
	* 품질검사 : 특급개발자 x 투입개월 + 책임개발자 x 투입개월 * 수치자료 가공 : 선임개발자 x 투입개월 + 개발자 x 투입개월 ...			
<b>경비</b>	클라우드 소싱비	설명 :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작성 ※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경우, 작업별로 단가표 제시 필수		
		가공 업무	작업	검수
		수집	200	100
		...	...	...
	단가 상세설명	·수집 n건 x 단가 000원 = 000원		
	SW 사용료	설명 : 사용되는 SW 중,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비용만 작성하며 범용 SW는 제외 ·SAS, SPSS : 이용료(license fee) 000원/월		
	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료	설명 : 웹사이트 공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		

☞ 작성 :

※ 판매기업만 **상품표(상품명·상품 분류)**를 작성하며, **상품이 2개 이상이면 표 추가하여 기재**

상품 ②	상품명	
	상품 분류	교통/ 금융/ 농식품/ 디지털산업혁신/ 라이프로그/ 문화/ 산림/ 소방안전/ 스마트치안/ 유통소비/ 중소기업/ 지역경제/ 통신/ 해양수산/ 헬스케어/ 환경 中 택 1

## 1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의 상품성

<작성요령>

- 판매 데이터 또는 가공 서비스의 상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
  - 해당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 기술, 활용 예시, 성과 등 기재
  -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한 해당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예상 수요 등 기재
  - 타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대비 차별성 또는 우수성 등 비교우위를 상세히 기재

☞ 작성 :

## 2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의 상세정보

<판매기업 작성요령>

- 수요기업측이 판매 데이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상세정보 및 데이터 상품 활용 정보 기재
  - 판매 데이터 상세 정보(데이터구조, 데이터 설명, 업무 프로세스) 기재
  - 데이터 형성 과정(생산, 수집 또는 외부 구매) 정보 등 자세히 기재
  - 판매 데이터 활용 안내 매뉴얼 및 API-컬럼 정의서 제공 계획 기재

<가공기업 작성요령>

- 가공 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공 서비스의 상세정보 기재
  - 가공업무 상세 정보(계획수립, 가공업무, 가공검수, 가공업무 방법 등) 기재
  - 이미지, 도식, 차트 활용 가능

☞ 작성 :

### 3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가격정책 및 단가표

**<판매기업 작성요령>**

- ※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는 예시이며 기업의 정책에 맞게 작성 가능
- ※ 수요기업과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작성 시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의
- (가격유형) 해당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과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1 후 기술
  - (종량제) 데이터 사용량(바이트, 레코드 건수) 또는 사용 횟수(다운로드 횟수, 접속 call 수)에 따라 가격정책을 기술
  - (정액제) 데이터셋에 대해 계약 용량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금 방식을 기술
  - (정액 종량 혼합제) 기본료의 기준(횟수, 용량, 시간 등)과 기본료 이전 이후의 가격정책을 기술
  - (주문 협의제) 주문 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격 범위와 협의 방식 기술
  - (기타) 상기 가격유형 이외의 기업 고유의 가격정책 기술

**<작성 예시>**

상품명		지역별 인구이동 및 카드사용 내역
가격정책	유형	설명 :종량제
	내용	설명 : - 횟수의 기준은 접속 call 수 - call 당 00원 - call n건 x 000원 = 000원
기타		설명: 이용자 맞춤 API 개발비용 000원 별도 과금(기업별 사용료 정책 제시)

☞ 작성 :

**<가공기업 작성요령>**

- ※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는 예시이며 기업의 정책에 맞게 작성 가능
- ※ 수요기업과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작성 시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의
- 인력별, 업무별로 구분하여 가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비용의 경우 크게 인건비와 경비(데이터 가공비/ SW 사용료/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)로 나누어 기술

<작성 예시>

기상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항목				
<b>인건비</b>	참여인력 구분	업무 구분	업무 내용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품질검사	설명	
	선임개발자, 개발자	수치자료가공	설명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학습데이터 생성	설명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기상자료처리	설명	
	<b>인건비 단가</b>			
	·특급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 ·책임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 ·선임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 ·개발자(경력 n년 미만) : m/m 000원			
	<b>가공비용 산식</b>			
	* 품질검사 : 특급개발자 x 투입개월 + 책임개발자 x 투입개월 * 수치자료 가공 : 선임개발자 x 투입개월 + 개발자 x 투입개월 ...			
<b>경비</b>	데이터 가공비	설명 :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작성 ※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경우, 작업별로 단가표 제시 필수		
		가공 업무	작업	검수
		수집	200	100
		...	...	...
	단가 상세설명	·수집 n건 x 단가 000원 = 000원		
	SW 사용료	설명 : 사용되는 SW 중,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비용만 작성하며 범용 SW는 제외 ·SAS, SPSS : 이용료(license fee) 000원/월		
	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	설명 : 웹사이트 공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		

☞ 작성 :

### Ⅲ 공급기업 활동전략

#### 1. 공급기업 활동을 위한 자원 활용 전략

<작성요령>

- (인적·조직적 자원)
  - 상품화, 커뮤니케이션, 역량강화 등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
  - 데이터 생산, 수집, 상품화 등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장, 인력 운용 전략 등을 자세히 기재
  - 수요기업과의 과제 협의, 상품 및 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, 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원활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역할 분장, 인력 운용 전략 등을 자세히 기재
  - 클라우드 소싱 등 외부 인력 활용 전략을 상세히 기재
  - 교육 등 공급기업 참여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을 기재
- (물적 자원)
  - 플랫폼, 장비, SW 등 공급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활용 전략을 자세히 기재

☞ 작성 :

#### 2.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전략

<작성요령>

-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을 상세히 기재
-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전략을 상세히 기재

☞ 작성 :

### 3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의) 품질확보 전략

<작성요령>

-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전략을 상세히 기재
  - 품질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, 품질 전담인력 채용 등 조직 강화 방안 기재
  - 품질관리 프로세스 정립 내용 또는 해당 상품의 대외 품질인증 획득 내역 기재
  - 대외 컨설팅을 통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노력 등 기재

☞ 작성 :

### 4. 수요기업 유지보수(후속 지원) 및 협업체계 전략

<작성요령>

- 수요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제공 목표, 관리계획 등 기재
-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공 서비스 제공 방안, 유지보수, 고객관리 및 고객 응대 계획 기재

☞ 작성 :

## 서식 4 (공통) 판매 데이터·가공서비스 가격정책 및 단가표

### 1. 판매 데이터(또는 가공서비스)의 가격정책 및 단가표

- ☞ 사업수행계획서(p. 20, 21) 와 동일한 양식이나 평가 및 포털 공시를 위해 가격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도록 요청

#### <판매기업 작성요령>

- ※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는 예시이며 기업의 정책에 맞게 작성 가능
- ※ 수요기업과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작성 시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의
- (가격유형) 해당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과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1 후 기술
  - (종량제) 데이터 사용량(바이트, 레코드 건수) 또는 사용 횟수(다운로드 횟수, 접속 call 수)에 따라 가격정책을 기술
  - (정액제) 데이터셋에 대해 계약 용량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금 방식을 기술
  - (정액 종량 혼합제) 기본료의 기준(횟수, 용량, 시간 등)과 기본료 이전 이후의 가격정책을 기술
  - (주문 협의제) 주문 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격 범위와 협의 방식 기술
  - (기타) 상기 가격유형 이외의 기업 고유의 가격정책 기술

<작성 예시>

상품명		지역별 인구이동 및 카드사용 내역
가격정책	유형	설명 :종량제
	내용	설명 : - 횟수의 기준은 접속 call 수 - call 당 00원 - call n건 x 000원 = 000원
기타		설명: 이용자 맞춤 API 개발비용 000원 별도 과금(기업별 사용료 정책 제시)

☞ 작성 :

**<가공기업 작성요령>**

- ※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는 예시이며 기업의 정책에 맞게 작성 가능
- ※ 수요기업과 과제협의를 및 견적서 작성 시 본 가격정책 및 단가표가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이면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유의
- 인력별, 업무별로 구분하여 가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비용의 경우 크게 인건비와 경비(데이터 가공비/SW 사용료/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)로 나누어 기술

<작성 예시>

기상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항목				
<b>인건비</b>	참여인력 구분	업무 구분	업무 내용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품질검사	설명	
	선임개발자, 개발자	수치자료가공	설명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학습데이터 생성	설명	
	특급개발자, 책임개발자	기상자료처리	설명	
	<b>인건비 단가</b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급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</li> <li>· 책임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</li> <li>· 선임 개발자(경력 n년 이상) : m/m 000원</li> <li>· 개발자(경력 n년 미만) : m/m 000원</li> </ul>			
	<b>가공비용 산식</b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품질검사 : 특급개발자 x 투입개월 + 책임개발자 x 투입개월</li> <li>* 수치자료 가공 : 선임개발자 x 투입개월 + 개발자 x 투입개월</li> <li>...</li> </ul>			
<b>경비</b>	데이터 가공비	설명 :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작성 ※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경우, 작업별로 단가표 제시 필수		
		가공 업무	작업	검수
		수집	200	100
		...	...	...
	단가 상세설명	· 수집 n건 x 단가 000원 = 000원		
	SW 사용료	설명 : 사용되는 SW 중,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비용만 작성하며 범용 SW는 제외 · SAS, SPSS : 이용료(license fee) 000원/월		
	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	설명 : 웹사이트 공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		

☞ 작성 :

## 서식 5

## [판매기업] 법률 검토 확인서

<b>법률 검토 확인서</b>			
※ 작성 자격 :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(신청 공급기업의 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가능) ※ 단, 휴업 중인 변호사는 제외			
<b>변호사</b>	<b>성명</b>		<b>연락처</b>
	<b>등록번호</b>		<b>등록일</b>
<b>소속</b>	<b>회사명</b>		<b>대표자</b>
	<b>소재지</b>		<b>대표번호</b>
<b>자문명</b>	<b>데이터 상품 000에 대한 검토의견</b>		
<b>내용</b>	<p><b>[목적]</b> OO(기업명)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하여, 동 사가 보유한 데이터 상품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, 신용정보법,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함</p> <p>※ 법률 검토 확인서 내용에 따라, 공급기업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</p>		
	<p><b>데이터 상품명 000</b>                      (개별 상품마다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, PMS에 접수하는 상품명과 동일해야함)</p>		
	<b>1. 위 상품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가능성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(의견)	※ 데이터 상품에 대한 저작권 보유 여부(혹은 2차적 저작물인 경우, 원저작자로부터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여부 등), 데이터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여부,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등	
	<b>2. 위 상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(의견)	※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,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,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, 가명처리 필요 여부(또는 데이터의 가명처리, 익명처리의 적법한 이행 완료 여부)	
	<b>3. 위 상품의 기타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(의견)	※ 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법, 생명윤리법 등 의료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※ 금융 분야의 경우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 ※ 기업정보 활용 시 해당정보 활용에 대한 저촉 여부 ※ 위치정보법,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도 저촉 여부	
위와 같이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
2022년    월    일 변호사 : _____ (인)			

